



행 정 안 전 부

수신 사단법인 한국조직학회(사단법인 한국조직학회장)
(경유)

제목 사단법인 한국조직학회 정관 변경 허가 신청 회신

1. 사단법인 한국조직학회 제26-12호(2026.9.22.)호와 관련됩니다.
2. 귀 법인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민법」 제42조제2항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신청안대로 허가하고, 개정된 정관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붙임 개정정관(한국조직학회)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주무관

최수연

행정사무관

이소민

조직기획과장

전결 2026. 10. 15.

서경원

협조자

시행 조직기획과-3663

(2026. 10. 15.)

접수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 www.mois.go.kr

전화번호 044-205-2305

팩스번호 044-204-8922

/ sychoi55@mail.go.kr

/ 비공개(7)

사단법인 한국조직학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조직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Organizational Studies)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조직관리에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국)

- ① 본 학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시 회장의 소재지에 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고문 및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법인은 상근임직원을 둘 수 있으며, 정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4조 (운영준칙)

- ① 법인은 제2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② 법인은 민법, 공법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주무부처 장관이 부과한 설립허가 조건에 따라 운영한다.
- ③ 법인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법인의 사업은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5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조직학 관련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2. 조직학 관련 학술 연구지의 발간
3. 조직에 관한 정책연구

4. 조직학 교육프로그램 연구
5. 조직학 관련 자료수집 및 편찬
6. 조직진단 및 컨설팅 제공
7. 기타 조직학 발전에 관련된 사업

제 2 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평생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공사부문의 조직관리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단, 교육 및 연구기관이 아닌 실무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교육 및 연구기관에서 집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공사부문의 조직관리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 한다.
3. 평생회원은 본 학회의 정회원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4.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찬동하며 한국 조직학 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공사, 법인,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제7조 (회원가입)

본 학회의 회원 자격은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한 후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연회비를 납부한 시점에서 취득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 ① 본 학회의 회원은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시한까지 당해 연도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및 간행물을 받으며, 학회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2년 이상 학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
2. 본 학회의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3. 본 학회의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10조 (회원의 탈퇴, 징계 및 제명)

- ① 본 학회의 회원은 탈퇴 또는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②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와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 및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1인
2. 차기회장 1인
3. 부회장 약간 명
4. 감사 2인 이내
5. 이사 30인 내외
6. 고문 약간 명
7. 자문위원

제12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통할한다.
- ② 차기회장은 차년도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회장과의 협의 하에 할 수 있다.
-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직무대행의 순서는 연장자부터 한다.
- ④ 감사는 본 학회의 회계사무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본 학회의 모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

다. 단,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운영위원회와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학회의 중요한 회무를 심의, 의결한다. 본 학회의 활동을 위하여 특정한 직무가 부여된 집행위원회를 만들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지정된 이사가 그 위원장을 맡는다.

⑥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한다.

제13조 (임원선임)

① 차기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④ 고문과 자문위원은 학계 및 실무계에서 조직학의 연구와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중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⑤ 전직 회장은 자문위원이 된다. 단,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때는 제외된다.

제14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기를 1년으로 할 수 있다.

제 4 장 차기회장 선출

제15조 (차기회장추천위원회)

① 차기회장 후보의 공정한 추천과 선출과정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차기회장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차기회장추천위원회는 전임회장단, 회장, 연구위원장, 총무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예비후보등록)

차기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매년 10월 20일까지 차기회장 추천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후보추천)

- ① 차기회장추천위원회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입후보한 예비후보 중 3인 이내의 후보를 10월 31일까지 총회에 제청한다.
- ② 10월 20일까지 차기회장 추천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가 없을 경우, 차기회장추천위원회는 회원 가운데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3인 이내의 후보를 선정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득하여 10월 31일까지 총회에 제청한다.

제18조 (선출방법)

- ① 차기회장은 총회에 제청된 후보 가운데 정관 제19조 총회의 의사결정규정에 따라 1인을 선출한다.
- ② 차기회장의 선출결과는 총회에서 발표한다.

제 5 장 총회 및 위원회

제19조 (총회)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 ②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재적 정회원 1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③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들을 관장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21조 (총회회의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2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집행위원회 위원장 및 집행이사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본 학회의 회장이 담당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본 정관에서 운영위원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3. 본 학회의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4. 기타 본 학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 및 의결한다.

1. 운영위원회는 본 학회의 회장 및 부회장 또는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운영위원은 그 의결권을 다른 운영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의결권을 위임한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4.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3조 (집행위원회)

① 본 학회는 학회 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특정 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의 종류 및 직무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 및 집행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④ 각 집행위원회의 위원은 담당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⑤ 각 집행위원회는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제24조 (편집위원회)

① 본 학회는 정관 제5조 제2항에 따라 한국조직학회보를 발간하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약간명의 편집이사과 30명 이내의 편집위원을 제청하

고, 회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비상근임직원(부편집인이나 편집간사)을 둘 수 있으며, 비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집행한다.

1. ‘한국조직학회보’의 편집 및 발간
2. 조직학 연구 관련 자료의 출판
3. 편집위원회 규정, 심사 및 투고 규정, 윤리위원회 규정 중 연구부정행위 관련 규정의 개정
4.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5조 (특별위원회)

- ① 본 학회는 학회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특정 분야 조직의 연구를 수행할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의 종류 및 직무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④ 각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담당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⑤ 각 특별위원회는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내규를 정하여 시행한다.

단, 각 특별위원회의 운영내규는 본 학회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윤리위원회)

- ① 본 학회의 질서와 발전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 ②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 규정에 윤리헌장, 윤리위원회 구성,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운영한다.

제 6 장 재 정

제27조 (재산)

- ① 법인은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③ 법인은 기본재산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④ 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본 학회는 회비, 기부금, 사업수입금 및 기타 수입에 대하여 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 ⑥ 예산 및 기부금 활용실적은 매년 4월 30일까지 한국조직학회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때 학회 홈페이지는 국세청 혹은 주무관청 홈페이지 중 1개소 이상이 링크되어 있어야 한다.

제28조 (경비)

- ① 본 학회는 회원의 연회비, 기부금, 사업수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연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9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보 칙

제30조 (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회장의 제청에 따라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 후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서류작성 및 비치)

- ①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 사업 년도 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은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법인은 총회회의록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 (보고)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두상으로 주무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해산)

-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그 목적의 달성불능 등으로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회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 없이 해산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에는 법인의 잔여재산은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4조 (파산)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회장 및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2003년 11월 1일 현재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 회원은 본 학회의 창립회원이 된다.

제2조

초대 및 차기 회장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하고, 초대 회장의 임기는 2003년 11월 22일 창립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차기 회장의 임기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제3조 (회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본 정관 변경 허가 당시 재임 중인 회장부터 적용한다.